

원·하도급 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원·하도급업체간 법상 안전관리책임구분

Q 당사(석유화학제조업체)내 협력업체 A, B, C, D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각 사의 작업자가 본인의 실수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하다가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당사와 협력업체간의 책임구분은?

- 당사의 단지내 별도부지에서 신규공장 건설을 위해 F사 종합건설업체에 일괄 도급, 공사계약에 의하여 공장건설 작업중 F사 작업자 또는 그 하도급업체인 G사의 작업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 사별 안전관리 법적 책임구분은?
- H사는 산재보상보험에 일괄 가입한 승강기 제작·수리전문업체로서 당사의 단지내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보수작업계약을 맺고 작업수행중 H사의 소속직원이 실족 추락에 의한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 책임범위는(H사는 본사에 산재가입되어 있음)?

A (1) 귀사의 사업주(도급인) 또는 협력업체(A, B, C, D사)의 사업주(수급인)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본인의 실수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등 전적으로 근로자 과실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귀사 및 협력업체의 사업주 모두는 동법상 법적 책임이 없음.

- 그러나, 동법상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책임 소재는 먼저 귀사

가 동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8조,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규정에 의한 법적 책임이 없음.

- 따라서, 협력업체(A, B, C, D사)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사업주에게 동법상 법적 책임이 있음.
- 다만, 협력업체 소속근로자가 귀사 시설물의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귀사의 사업주에게도 동법상 법적 책임이 있음.

(2) 귀사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별도 사업으로 종합건설업체인 F사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행하도록 하고, 동 건설업체에서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사업의 일부를 G사에 도급하여 공사를 행할 경우, 종합건설업체 F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하도급업체인 G사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와 책임을 다 하여야 함

- 따라서, F사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F사의 사업주가 동법상 법적 책임이 있고
- G사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G사의 사업주가 동법상 법적 책임이 있음은 물론

Q & A

F사의 사업주에게도 동법 제18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규정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음.

- (3) H사 소속근로자가 귀사에서 승강기보수작업 중 실족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등 승강기보수작업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책임은 H사의 사업주에게 있음.
- 다만, 승강기보수작업과 관련이 없는 귀사의 일반 시설물 또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H사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귀사의 사업주에게 개구부등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준수여부 등 동법상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고, H사의 경우에는 동 재해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등 동법상의 일부 책임이 있음.

(산안 68307-368, '93. 8. 24)

공동수급사업에서 산업재해발생 책임은

Q 4개회사 A, B, C, D가 동일한 25%씩의 지분으로 민간자본을 출자하기로 하고 A사를 공동수급 대표사로 선정하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사업수행중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관한 행정적·법적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만 있는 것인지?

- 만약 공동도급중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업재해발생 책임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 각사가 구간을 정하여 책임관리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작성하여도 주관회사는 산업재해관련 책임을 분담할 수 없는지?

- 기타 산업재해발생의 행정적·법적 책임을 공동참여 회사 각사가 분담하여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A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와는 별개이고, 동법에서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에 있어서 경영주체(개인기업 : 그 사업주, 법인 : 법인 그 자체)를 말하므로 4개회사가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사업을 수행중일 때 발생한 산업재해의 책임은 4개회사 모두에게 있다고 사료됨.

- 산업재해예방 이행의무 주체인 사업주는 4개회사 모두가 해당되지만 각사가 책임구간을 정하여 안전관리를 할 때의 행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사의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안전관리자 제외) 및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분담이행방식은 분담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주의 책임이나, 공동수급체가 공사수급 및 시공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은 예산회계법의 제반규정에서 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개념도 이와 부합되고 있으므로 공동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건안 68307-184, '94. 7. 19)

서로밀고 방심말고 서로먼저 안전예방
안전관리 따로없다 너와내가 안전요원